



(재) 여의도연구소
www.ydi.or.kr

The Youido Institute

통권 21호 Vol. 2011-03

이슈 브리프

ISSUE BRIEF

발행처 · 여의도연구소

발행인 · 정두언

발행일 · 2011년 11월 4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논쟁과 정책적 과제

여의도연구소의 「자영업자 정책간담회(2011.9.21)」, 「카드수수료 정책토론회(2011.10.17)」등을 통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가 카드수수료 부담임이 확인됨.

가맹점 규모 · 업종 간 카드수수료율 격차 문제,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수납의무 완화 문제, 가맹점 단체협상권 부여 문제, 수익자부담원칙 위배 문제 등이 주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본 보고서에서는 체크 ·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현행 여전법 제19조 개정을 통한 신용카드수납 의무 완화, 교섭단체 범위 확대 및 기존의 법정단체 교섭대표 인정 등을 통해 가맹점의 협상 여건 개선,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의 전향적 검토, 4당사자 구조 도입의 필요성 검토 등의 정책적 해법을 제시함.

Contents

I. 논의 배경 ····· p2

II. 신용카드 시장 및 카드수수료 관련
규제 동향 ····· p3

III. 주요 쟁점 ····· p4
1. 가맹점 규모 · 업종 간 수수료율 격차
2. 신용카드 수납 의무
3. 가맹점 단체협상권
4. 수익자부담 원칙

IV. 카드수수료 문제의 해법 ····· p8
1. 체크 ·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2. 신용카드수납 의무 완화
3. 가맹점의 협상 여건 개선
4.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전향적 검토
5. 4당사자 구조 도입의 필요성 검토

V. 결론 ····· p11



I. 논의 배경

- 여의도연구소에서 개최한 「자영업자 정책간담회(2011.9.21)」, 「카드수수료 정책토론회(2011.10.17)」등을 통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가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하 '카드수수료'로 나타냄)임이 확인됨.
 - 영업마진이 적은 영세 가맹점일수록 어려움 가중.
 - 최근 음식업, 학원업, 유흥업, 안경업 등,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 종사자 및 직능단체의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형가맹점은 1.5~2.0%, 중소가맹점은 2.0~3.6% 수준임.
 - 이러한 실정에 대해 중소가맹점들은 “부가세 10%에 카드세 3%”라며, 수수료부담을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여 줄 것을 요구.
 -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수익과 카드론 대출 등 타 사업에서 벌어들인 회사의 수익이 카드수수료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며 더 이상의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
- 카드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들은 정부의 1만원 미만 카드사용 제한 움직임에 반발할 뿐 아니라, 포인트와 연회비 면제와 같은 기존의 혜택을 계속 누리기를 기대.
-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집단행동에 정치권에서 '부당한 차별 금지의 법제화' 추진이라는 강수를 내기도 함.¹⁾
- 카드수수료 문제는 가맹점과 카드사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중개회사인 VAN사(신용카드승인 중계회사), 소비자인 카드회원, 정책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 카드세수를 무시할 수 없는 국세청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연관되어 정책적인 조율이 매우 어려운 사안중의 하나임.
- 이러한 배경 아래,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신용카드 시장·정책의 문제를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쟁점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

1) 홍준표의원 대표발의(2011.10.18)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근의원 대표발의(2011.10.20)의 동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II. 신용카드 시장 및 카드수수료 관련 규제 동향

- 1960년대 후반 유통업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신용카드 시장은 1980년대에 은행들이 진출하면서부터 확대되어 옴.
 - 1990년대 후반 신용카드 이용과 가맹점 가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부의 각종 지원책의 영향으로 외형적 성장 지속.
 - IMF 외환위기 이후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신용공여에 따른 이른바 카드대란으로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세원확보와 내수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 카드사들의 자구 노력으로 2005년 말부터는 신용카드 시장이 안정화 되었고, 근래에는 상당한 수익 창출.
- 2011년 10월말 현재 국민, 삼성, 신한, 비씨, 롯데, 현대, 하나 등 7개 전업카드사와, 13개 겸영은행, 8개 유통업계 카드사가 영업 중임.
 - 카드가맹점 수는 전국적으로 약 1,700만 업소(중복가맹점 제외 시 229만여 개) 정도.
 -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517조원, 수익은 2009년 말 현재 10조원 수준.
 -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2011년 9월말 기준으로 1억2천만 장 수준, 이는 경제활동인구 1인당 4.8매에 해당함.

연도별 신용카드 발급 수 추이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카드발급 수 (백만장)	89	105	95	84	83	91	89	96	107	117
1인당 카드수 (장)	4.0	4.6	4.1	3.6	3.5	3.8	3.7	4.0	4.4	4.7

자료 : 한국은행 및 여신금융협회 자료 재정리

- 최근 카드사용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건당 이용금액은 감소세. 하지만,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 한편으로, 과도한 고객확보 경쟁 등에 따른 소비자 신용 문제와,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중소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이견이 지속적으로 표출.
 - 특히,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중소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알력이 최근 들어 핵심 쟁점이 되어 재 점화되고 있음.
 - 중소가맹점과 카드사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소비자 및 정책당국과의 갈등도 나타남.

Ⅲ. 주요 쟁점

1. 가맹점 규모 · 업종 간 카드수수료율 격차

- 중소자영업자들은 카드수수료 문제의 핵심을 대형가맹점과의 ‘차별’에 두고 있음. 현실적으로 대형가맹점들은 1.5~2.0% 수준인 반면 중소가맹점들은 2.5~3.6%의 수수료율을 부담.
 - 같은 업종임에도 규모나 대외협상력 차이로 대형가맹점에 비해 최대 2.4%까지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입장.
 - 또한, 카드사들은 대형마트의 낮은 수수료에서도 수익을 올리면서도 중소가맹점들로부터의 높은 수수료율로 높은 수익을 올린다고 주장.
 - 카드사 수익이 2003년 5조원에서 2009년 10조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중 가맹점 수수료의 비중이 2003년 27.9%에서 2009년 60.5%로 지속적으로 증가.
- 카드사들은 이러한 중소가맹점들의 시각이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면이 많으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
 - 대부분의 중소가맹점들이 정부에서 정한 중소기업세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실제로 2% 내외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실정이며,²⁾ 3.3~3.6% 높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비울적으로 매우 적다고 해명.
 - 또한,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해명.
-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07년 말 이후 최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율을 부분적으로 인하해 옴.
 - 가장 최근에는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1억2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전통시장 내 1.6~1.8%, 전통시장 이외 2.0~2.15%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묶어두고 있음.
 - 내년에는 그 범위를 1억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최근 발표.
- 카드사들은 최근 중소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와 정치권의 요청을 수용, 연매출 2억 원으로 그 범위를 높이고, 적용받는 수수료율도 다소 인하하겠다고 발표.³⁾

2) 카드사 측에서는 중소가맹점들의 실제 수수료율이 1.6%수준이라는 주장이 있음(2011.10.17일자 여의도연구소 정책 토론회 김석중 여신협회 상무 발언).

3) 2011.10.17(월)일자 언론보도 참조.

2. 신용카드 수납 의무

- 중소기업점들의 요망 사항 중의 하나는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임.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에는 가맹점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으며,⁴⁾ 위배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
 - 최근 정부는 1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 카드 이외의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언론을 통한 소비자들의 반대로 무산.
- 소비자들의 신용카드사용이 늘어나면서 현금대신 신용카드 결제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
 - 1만원 미만 카드결제건수가 2억2천만여 건으로 전체 카드결제건수의 30%, 5천원 이하는 전체의 15% 차지.
- 소액의 카드결제에는 관련된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듦. 그런 이유로 카드사들은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
 - 중소기업점들과 마찬가지로 카드사들 역시 소액결제의 경우 현행 신용카드 수납의무를 일정부분 완화하는데 반대하지 않는 입장.⁵⁾
- 이 문제의 해결은 다른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
 - 신용카드사용이 생활화된 소비자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는 실정.
 - 여의도연구소 조사결과, 소액에 한하여 신용카드와 더불어 현금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비율과 반대 비율이 각각 47.5%과 45.9%로 비슷.⁶⁾
 - 플라스틱머니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1만 원 이하 카드수납 의무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
- 정부나 조세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일단 유보적 입장.⁷⁾

4) 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5) 1~2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현금수납 허용에 찬성하는 입장 표명(2011.10.17(월)일자 여의도연구소 정책토론회).

6)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는 반대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 이상은 찬성 비율이 높았음. 직업별로는 자영업 종사자와 생산직 및 일용직의 경우 찬성 비율이 높은 반면, 회사원과 공무원, 학생의 경우는 반대 비율이 비교적 높았음. 전국 성인남녀 2,088명을 대상으로 2011.10.10 실시한 ARS전화조사 결과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4% 포인트임).

7) 법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납의무 자체를 없앤다면 조세의 투명성과 세수 확보에 상당한 문제. 하지만, 1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면 건별 기준으로 14.7% 정도의 거래만 면제대상이며, 또한 일정부분 현금영수증 제도로 보완될 수 있어 별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었음.(2011.10.17(월)일자 여의도연구소 정책토론회)

3. 가맹점 단체협상권

- 대형가맹점 및 조직력을 갖춘 단체가맹점들은 카드사와의 가맹점수수료율 협상에 있어서 나름의 교섭력이 있음.
 - 지난해 모 대형마트는 특정 회사 카드의 결제 거부를 통해 수수료율을 1.5%로 낮췄으며, 한 외국계 대형마트는 특정 카드사와 0.7% 수준의 극히 낮은 수수료율의 독점계약을 맺기도 함.
 - 모두 교섭력이 높은 이른바 계약상의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였음.
 - 대부분의 중소형 가맹점들은 카드사에서 지정한 수수료율로 계약하게 되는 '을'의 입장.

- 이러한 계약의 비대칭적 관계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매출액 9천6백만 원 미만의 중소가맹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상의 주체로 내세울 수 있게 되었음.
 - 하지만, 동일 업종의 유사한 성격의 가맹점을 분류하여 대표단체를 구성하기가 극히 어려운 여건이며, 연간 매출액 9천6백만 원은 영세가맹점들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소액에 해당.
 - 아직까지 단체협상을 위한 단체를 구성한 예가 전무한 실정.

- 이러한 현실 아래 중소가맹점들은 보다 유연한 단체협상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음. 즉 현행의 포괄적 단체들을 협상대표로 인정하고, 허용 대상 매출액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

- 카드사들은 이러한 단체협상권 부여에 부정적 입장.
 - 시장원리에 반하는 이른바 힘의 논리에 의해 시장이 왜곡될 수 있으며,
 - 지금도 가맹 업종별 대표들과 협의를 위한 모임을 갖고 있어 충분한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는 입장.

- 정부 역시 단체협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술한 기존 법규정 준수라는 원칙적 입장 견지.

4. 수익자부담 원칙

- 중소기업 가맹점들의 핵심 불만 중의 하나는, 카드사용에 따른 신용공여 등의 혜택을 누리는 카드회원들의 부담을 모두 가맹점이 떠안아야 하는 현행 구조임.
 - 예컨대,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15~48일간 외상 구매하면서 그 이자부담은 전부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다는 견해.
- 반면 소비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를 받고, 연회비면제나 할부이자 면제, 각종 포인트 등 카드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혜택을 누림.
 - 그럼에도 카드 사용 시 발생하는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수 없도록 현행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실정.⁸⁾
- 가맹점 매출 증가 등 카드사용 활성화에 따른 적지 않은 혜택들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에 따라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 수입의 일정부분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용카드 결제액의 1~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혜택들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3항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Ⅳ. 카드수수료 문제의 해법

- 타 분야·업종과 마찬가지로, 선거철을 앞두고 점증하는 중소가맹점들의 주장은 대형가맹점 수준의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초점.
 - 이 문제에 대응해, 정부나 정치권의 카드사들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촉구나 혜택 받는 가맹점 범위 확대 등의 단기적 조치를 통해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나, 궁극적 해법이 될 수는 없음.
- 2011.10.17(월) 여의도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입법·정책적 조치를 통해 신용카드 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임.⁹⁾
- 상술한 카드수수료 쟁점들에 대응하는 몇가지 정책적 과제를 제안함.

1. 체크·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카드수수료 문제뿐 아니라 신용카드 서비스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비시장적인 신용카드 사용 패턴을 바꿔줄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가 현금과 같이 인식되고 사용되고 있으며, 결제 비율도 현금을 능가하고 있음.
 - 내수활성화, 세수 투명화 등 정책목표 달성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카드수수료 문제와 같은 카드서비스가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귀속 문제에 따른 갈등,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카드결제에 따른 가계부채와 금융채무불이행자 수 증가 등의 부작용이 커짐.
-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과도한 혜택 축소 및 직불·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의 인센티브 증대 필요.
 - 예컨대, 신용카드의 연말 소득공제 비율을 점차 낮추고 각종 포인트와 연회비·할부이자의 면제 혜택을 줄여나가도록 권장하는 대신, 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주는 방안 추진.
 - 잔고범위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한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이 늘어나, 자연스레 신용카드 사용 감소뿐 아니라 부분별한 과소비나 금융채무불이행의 문제가 감소될 것임.
 - 직불카드 등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나 미성년자도 사용이 가능하여, 현금사용에 따른 불편함도 해소될 수 있음.

9)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유재훈 수석전문위원은 카드시장의 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는 견해를 피력함.

- 현금사용에 따른 세원 비노출 문제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 가능.
 -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비교적 수수료율이 낮으므로 작금의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됨.
-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신용카드 대체수단 활성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됨. 상술한 여의도연구소 조사결과, 찬성(70.7%)이 반대(20.4%)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옴.

2. 신용카드수납 의무 완화

- 소액결제에 한정해서 가맹점의 신용카드수납 의무를 완화하거나 해제해 줄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의 규정을 개정해야 함.
 - 현재 신용카드 수납이 법정 의무화되어있고,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사실상 강제화되어 있는 실정.
 - 신용카드 수납의무 완화 문제는 미루면 미룰수록 카드사용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저항이 더욱 커질 우려.
- 1만원 내지 5천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 현금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의 대가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경제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¹⁰⁾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10달러 이하의 소액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권리를 가맹점에 부여.¹¹⁾ 이 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대다수의 미국 중소가맹점들은 여전히 10달러 이하의 소액거래를 거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임. 다시 말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현금도 받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카드결제도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소비자들의 경우 상술하였듯이 이러한 소액 현금결제 허용 방안에 찬성하는 경우가 반대하는 경우보다 적지 않음.
 - 상술한 여의도연구소 조사결과, 찬성(47.5%)이 반대(45.9%)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편향적 시각내지 선입견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법 개정 등 신속한 입법조치가 요망됨.

10) 현금과 달리 신용카드 거래는 거래와 결제의 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 시장원칙과 관행이 아닐 것임.

11) 다음 사이트 참조. www.cardhub.com. 금융개혁및소비자보호법(도드프랭크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수정안이 통과된 2010년 9월부터 10달러 이하의 소액에 한해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거부가 가능하게 되었음.

-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가맹점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임.

3. 가맹점의 협상 여건 개선

- 전술한 중소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협상에서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점들의 단체협상권을 보다 유연하게 해줄 필요가 있음.
 - 최근 한나라당 정태근의원 대표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즉 현행 법(시행령)에서 정한 연매출액 기준 규모 대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게 단체협상을 위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임.¹²⁾
 - 이와 같은 교섭단체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카드사(단체)와 가맹점(단체) 간의 시각차가 매우 큰 실정.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을 좁힐 필요.
- 중소 및 대형 가맹점 간 협상력 격차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후술하는 수수료 상한과 더불어, (주로 대형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 하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이 방안은, 수수료 상한설정의 문제점과 더불어 시장의 힘에 의한 가격(수수료)설정 원칙에 위배되어 시장왜곡의 부작용이 우려됨.

4.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전향적 검토

- 다소 강화된 규제책으로서, 대부자금의 이자상한 규제와 같이,¹³⁾ 카드수수료율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수수료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일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 해당 가맹점의 불만과 애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이 방안은, 관련법에 의해 기존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특정적으로 부여된 여러 혜택이 축소될 소지가 큼. 즉, 수수료 상한 설정 시 카드사들이 법정 최고한도의 수수료율에 맞추려할 것임.
 - 이에 대응하여, ‘평균수수료 상한’을 수수료율 상한 규제와 함께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12) 동법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의 제1항 중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부분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으로 개정하는 법 개정안임. 다시 말해 기존의 일정수준의 연매출액 기준의 대표단체 구성 요건을 배제하되, 현재 적법하게 활동중인 조합·단체를 협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임.

13)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자금 최고 금리를 39%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에서는 연 30%(동법 시행령)로 규제하고 있음.

5. 4당사자 구조 도입의 필요성 검토

- 그동안, 카드소지자, 가맹점, 카드사 3자간에 카드매출채권이 양도되고 양수되는 이른바 현행 3당사자 제도를 은행과 같은 제3자가 포함된 4당사자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카드수수료율 인하 수단의 하나로 논의되어 왔음.¹⁴⁾
 - 가맹점에게 카드 매입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수수료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논리임.
- 이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양립하는 실정이며, 향후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사안.
 - 만일, 외국과 같이 카드 매입사 시장이 독과점적 구조가 되면 이들의 협상력이 발급사보다 커져 발급사의 정산수수료를 제한하여 가맹점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독점적 매입사의 이익극대화 추구로 가맹수수료 인하효과가 별로 없을 가능성도 있음.¹⁵⁾ 또한 구조변화와 새로운 조직 설립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임.

V. 결 론

- 이상, 신용카드 시장 동향 및 카드수수료 관련 규제 현황과 최근 쟁점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음.
- 상술한 제 방안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 적절한 해법이 도출됨으로써,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중소기업 종사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 간의 오랜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어 신용카드업과 신용카드 시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함.

※ 문의 : 연구위원 이종인, ☎ (02)2070-3315, jongin_lee@yahoo.com

14)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여의도연구소 정책간담회 자료(2011.8.17, 발표자 조길중); 신용카드업 제도개선 방안 (2008.12,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최근에는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 대표발의로 4당사자 구조 도입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이 추진 중임.

15) 우리나라는 시장이 좁아, 미국과 같이 수많은 카드발급사와 매입사가 존재하여 시장경쟁에 의해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시각도 있음.

〈Issue Brief〉는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우리나라의 정책정당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것입니다.

〈Issue Brief〉에 개진된 내용은 한나라당 및 여의도연구소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재) 여의도연구소
www.ydi.or.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 기계회관 신관 3층
TEL · 02-2070-3303 FAX · 02-2070-3331